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세무2과 환급금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에관동)

02-3396-8919
(환급문자신청 전용번호)
※ 단문만 가능
환급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입력후 신청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신당
현대우편취급국
요금후납

0 4 5 5 8

지방세환급금 지급총당통지서 재증

http://etax.seoul.go.kr
ARS 1599-3900
FAX 02-3396-8712 신청가능

환급번호 140-2019-000576-000
안내전화) 02-3396-5214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1층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서울특별시청계청
사)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04520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신 후 바로 위 접선 따라 절취하시고 이곳에 붙여서 봉합하신 후 우편함에 넣어주세요(우표는 붙이지 마세요)

[지방세환급금 지급(총당)통지서]

환급번호: 140-2019-000576-000		[환급결정일: 2019/01/30]					
권리자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주민(법인)등록번호	***83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1층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서울특별시청계청사)					
과오납내역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연월일	환금액	환급가산금	환급합계 (환금액+가산금)
	2018/01	신고분	자동차세 자동차 서울31㎡1516	2019/01/22	₩7,270	₩10	₩7,280
총내역	연도	기분	과세번호	세목	미납액	총당금액	총당후 미납액
						0	0.0
정산내역	환급금합계	₩7,280	총당금액	0	채권압류액	0	총당후잔액 (환금액)
	위의 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환급사유: 자동차세 연납후 폐차말소, 이전						
						2019년 0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방세 환급금 청구서 겸 환급계좌 신청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환급번호: 140-2019-000576-000】			
권리자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주민(법인)등록번호	***83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1층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서울특별시청계청사)					
연도	기분	세목	환금액 합계	총당금액	채권압류액	청구금액	
2018/01	신고분	자동차세 자동차	₩7,280	0	0	₩7,280	
환급받을 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연락전화 :		
※ 주의 : 계좌번호는 권리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타인계좌, 차명계좌로는 입금이 안됩니다)							
위의 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 공지사항

- 환급금을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 구청에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FAX신청가능)
-신청접수된 계좌정보는 지방세환급금 지급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금계좌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추후 환급금 발생시 이 계좌로 입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대리인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권리자가 작성한 환급금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화살표 방향 안쪽으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	성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 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 번호	
	주소			
환급번호		환급금		양도금액
본인은 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구청장 귀하			신청인(양도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환급금 양도신청서 2. 양도·양수인 신분증 사본 3. 양수인의 통장사본 4.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양도신청서 인감날인)				

위임장

아래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방세 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환급번호				
위임인	성명 (법인명)	인감 날인	주민(법인) 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번호		
	주소			
※ 대리인은 위임인(납세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환급금의 양도시에는 「환급금양도신청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

--	--	--	--	--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세무2과 환급금담당)

04558

지방세환급금 수령방법 및 안내문

◎ 지방세환급금이 무엇인가요?

● 귀하께서 우리 구청에 납부하신 세금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 지방세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스마트앱 또는 ARS신청 : <http://etax.seoul.go.kr>(인터넷)나 stax(앱전용)에 접속 또는 ARS 1599-3900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단,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로서 납세자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 개인납세자에 한합니다.

● 전화 및 팩스신청 : 환급청구서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해당구청에 전화 및 팩스신청(FAX.02-3396-8712~8713)

☞ 성명,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통보

● 우편신청 : 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사람' 이 밖으로 향하게 접어 풀칠하신 후 봉합하여 해당구청으로 우편발송

◎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본인명의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 및 ARS(1599-3900) 신청가능

【환급금 지급기한】 지방세 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